

開發에 뜻지않게 重要한 것은 開發된 技術의 獨占을 保障하는 特許制度의 認識提高와 効果의 利用 및 對應方策의 樹立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제는 制度改善에 따른 企業의 呼應과 技術開發의 分발이 要求된다고 생각된다. <♣>

改正 實用新案法의 主要內容

I. 法改正의 背景 및 方向

實用新案法의 對象이 되는 考案은 特許法의 對象이 되는 發明과 같이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的思想을 對象으로 하는 점에서 같으나 다만 그 기술적 수준이 發明보다 低級한 水準의 창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中小企業의 育成이라는 產業政策的 見地에서 認定되는 制度이므로 그 法體制 또한 特許法의 體制를 그대로 準用하고 있어, 금번 改正法의 背景이나 方向도 特許法과 거의 같다 고 할 수 있다.

III. 主要 改正內容

1.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제도개선(제22조)

구법상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10년으로만 되어있어, 심사처리가 지연(심사청구의 지연이나 심사적체 등)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있는 모순을 시정하여 개정법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실

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익의 증진을 도모했다.

2. 무효심판의 제척기간 제도 삭제(구법 제26조)

구법하에서는 실용신안권의 무효사유중 외국에서 발표된 간행물기제에 의한 공지를 이유로 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제척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이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효심판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선진제국의 입법경향과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에 합치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3. 기타 개정사항

- 국내우선권제도의 신설(제11조)
- 보정각하제도 및 보정각하 불복항고심판 제도 신설(제11조, 제35조)
- 실용신안하의 공용·수용제도 개선(제29조)
- 실용신안권의 일부포기 제도 신설(제147조)
- 손해액 산정규정 신설(제31조)
- 국제예비심사제도의 채택(제37조, 제45조)
- 비밀특허 제도개선(제11조)
- 법체제 정비에 대하여 특허법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

신
간
내

변리사시험 대비
論 題
新 商 標 法

- 규격 : 국판350면
- 가격 : 7,000원
- 저자 : 김 관 형 <본회 조사부장>